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여되는 비밀 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기존 “수탁기업 및 위탁기업”에서 “위탁기업”으로만 한정함(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